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10. 31 선고 2024가단2861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4. 9. 26.

판결 선고 2024. 10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부산 해운대구 D, E동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) 건물 1층 129.62㎡, 2층 238.15㎡를 인도하고,
나. 702,674,3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7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박민수

별지